

교육력강화센터 규정(4-1-9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육력강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, 체계적인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본교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(기구) 교육력강화센터에 교수학습지원팀, 고등교육평가연구팀을 두며, 교수학습분야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6.09.08., 2018.03.21.)

제4조(센터장)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교원 및 연구원) ① 본 센터는 박사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주임교수, 연구교수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은 건양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교원 및 연구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교학처장, 주임교수 및 단과대학별 교학부장으로 구성 한다.(개정 2016.09.08.)

③ (삭제 2016.09.08.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내 부서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센터 내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

- 4. 교수학습분야 전문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교수학습지원팀

제10조(조직) ① 교수학습지원팀에 교수지원부, 학습지원부, 이러닝지원부, 교육매체제작부를 둔다.

② 교수학습지원팀에는 주임교수 및 연구원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업무)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지원부

- 가. 교수법 개발 및 연구지원
- 나.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다. 수업평가 개편
- 라. 수업평가 및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
- 마. 단계적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

2. 학습지원부

- 가. 학습법 개발 및 연구지원
- 나.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다. 학습스타일, 기초학습능력진단검사 도구 개발 및 분석
- 라.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동기유발, 팀워크,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- 마. 수준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학습지도

3. 이러닝지원부

- 가. 교수학습시스템 이러닝 관련 프로그램 활용 및 지원
- 나. Open Course Ware(OCW) 기술지원 및 운영
- 다. 사이버강의 개발 및 지원
- 라. 이러닝 관련 사용자 교육 및 지원

4. 매체제작부

- 가. 교육콘텐츠 제작 및 지원
- 나. 교내외 기록 영상물 제작
- 다. 교육기자재 관리 및 대여

제5장 (삭제 2018.03.21.)

제12조 (삭제 2018.03.21.)

제13조 (삭제 2018.03.21.)

제6장 고등교육평가연구팀(개정 2018.03.21.)

제14조(조직) ① 고등교육평가연구팀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주임(연구)교수 및 연구원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질관리위원회를 두며,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업무) 고등교육평가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핵심역량진단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
2. 대학교육만족도 계획수립 및 시행
3. 핵심역량진단 및 대학교육만족도 결과 분석 및 환류
4. 역량중심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장 재정과 회계

제16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8장 기 타

제17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19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 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, 기초학력증진실,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의 업무를 센터에서 승계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